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33
----------	-------

발의연월일 : 2026. 7. 29.

발 의 자 : 김정호 · 이연희 · 임미애
이수진 · 안태준 · 허종식
박용갑 · 김남준 · 전진숙
박 정 · 허성무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생물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국고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동안 축적된 생물자원 관련 정보를 활용한 생물다양성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과 기술개발 및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물다양성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술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물자원의 활용과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8호, 제27조제7호 및 제31조제5호 신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생물다양성 관련 산업화 지원

제2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생물다양성 관련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

제31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생물다양성 관련 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① (생 략) ②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u><신 설></u> 8. (생 략) ③ ~ ⑦ (생 략)	제7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7. (현행과 같음) <u>8. 생물다양성 관련 산업화 지원</u> <u>9. (현행 제8호와 같음)</u>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u><신 설></u>	제27조(기술개발) ----- ----- ----- -----. 1. ~ 6. (현행과 같음) <u>7. 생물다양성 관련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u>
제31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31조(국고 보조) ----- ----- ----- ----- -----.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5. 생물다양성 관련 산업화 지</u>
<u>5. · 6.</u> (생 략)	<u>원에 관한 사업</u>
	<u>6. · 7.</u>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